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8. 2 (화) 평창군수(지역도시과장)

나. 회부일자 : 2005. 9. 20(화)

다. 상정일자 : 2005. 9. 23(금) 제12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 9. 2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토지주의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조달 및 관리를 통하여 주민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안 제2조)
- 특별회계의 자원(안 제4조)
- 특별회계의 용도(안 제5조)
- 대지보상금 보상 원칙(안 제6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가. 본 조례안은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이에 따라 발생될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대지에 대해 보상 재원을 조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국·도비 보조금 및 용자금 등으로 하고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출용도의 내용과 대지보상금에 대한 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 매수청구된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며
  -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고려할 때현금의 지급 규정만 명시하고 있는 부분과 정부의 보조금 및 도비 군비 등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다. 본 조례안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에 의해서 매수보상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 일시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매수순위 결정방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 특히 군의 많은 예산이 일시에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집행관리에 신중한 자체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참고로 2003년도 당시 추정된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는 148필지에 5만 7,000여평방미터로 추정되고 소요예산은 당시 공시지가 기준 119억 8,900만원으로 파악되었음

마. 기타 조례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장기미집행금제확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부 끝.**